비조치의견서 (☑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요청대상 행위	□ 외부로부터 전송받은 전자메일을 내부 업무망 메일서버로 전송할 때, 망연계 시스템을 통해 본문의 스크립트와 악성코드를 제거하고 재조립하여 전송 하는 것이 망분리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
판단	□ 요청대상 행위는 망분리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
판단이유	□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· 차단 및 접속금지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
	○ 업무상 필요에 의한 내부망과 외부망 간 자료 교환을 위해 보조기억장치 또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	□ 따라서 망간 자료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망에서 수신된 이메일을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내부망으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며,
	○ 다만, 자료 전송 과정에서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해 악성코드 검사, 본문 Text 또는 이미지 변환*, 첨부파일 필터링** 등 적절한 통제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.
	* 외부 링크, eml Tag, 스크립트 등 제거 ** 문서파일 및 이미지파일 외 첨부파일은 내부통신망 전송 전 제거

- ※ **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